

부산직할시사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992. 11. 11

도시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3일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도시위원회(1992. 11. 11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지역교통과장 안병일)

가. 제안이유

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있어
이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.

나. 주요골자

- 세입재원 : 주차요금, 주차위반과태료, 기타 수입 등
- 세출용도 : 주차시설 확충관리,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, 기타주차관련사업
- 잉여금처리 :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
- 예비비설치 :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가능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: 별첨자료 참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(일문일답식으로 진행)

- 손판암 위원(질의)

동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세입재원은 주차요금, 주차위반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얼마정도 예상하는지? 또한 세출분야에 주차장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 단속공무원의 급여도 포함되는지 자세한 범위는?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금년기준 약 4억정도 예상되며 현재 지역교통과 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되고 주차단속 요원의 피복비, 수당, 수용비수수료, 주차구획선 도색비 등을 말하고 있음.

○ 김신우 위원(질의)

특별회계를 설치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시 어떤 방법으로 하며 또한 수지타산이 맞는지? 차량도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따른 문제는?

○ 지역교통과장(답변)

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하여 운영에 따른 모든 책임을 피위탁자가 책임질 것으로 협약시 규정될 것이며, 도로점용료 등이 없이 순수한 인건비 지출뿐이므로 적자는 되지 않을 것임.

5. 토론포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찬성8, 반대 0)